

# 特許權 侵害와 特許發明의 保護

## 特許의 同一性判斷에 관한 各國의 學說 및

### (3) 用語創作者로서의 特許權者

美國에서는一般的으로 特許權者自身이 用語創作者라는 것이 認識되고 있다(Every patentee may be his own lexicographer). 그것은 特許權者가 그들自身的 用語를 스스로 選擇할 수 있고, 또한 만일 特許權者가 用語를 使用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用語의 意味를合理的으로 명백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用語를 그가 생각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例證하는 케이스로는 제5區 巡迴法院의 Harri-gton Mfg. Co. v. White事件(1973)이 있다.

이 事件에서 特許權者인 Meece-Dew의 特許는 地面과 일치되게 나무를 자르는 裝置에 관한 것이었다.

이 特許는 ① 나무의 뒷면을 밀어 밟기 위한 固定鉗(jaw)

② 나무를 자르기 위한 날

③ 날을 당기기 위한 한쌍의 水壓 실린더

④ 받침 빔(Beam)이 있는 트랙터로부터 延長된 받침 팔(arms)

⑤ 切斷機(Shearhead 즉 앞의 3요소)와 받침 빔 사이의 中추적 연결

⑥ 地面에 주어진 角度로 切斷機를 固定하기 위한 手段으로 構成되어 있다.

Meece-Dew 發明의 基本概念 및 開發內容은 다섯 번째 要素에 있었다.

地面에 따라 切斷機의 角度를 調整함에 의해서 나무의 垂直이 생겨나는 問題를 解決하였다.

그러나 침해의 問題는 6번째 要素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eece-Dew는 빔에 수직으로 延長된 지지포스트(Post)와 절단기에 接着되어 있는 체인으로서 모델을 만들었다. 체인을 設置하는 方法이 가장 強하고,

配置하거나 수선하기 쉬우며, 費用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크레임의 要素는 固定된 鉗의 構成品(jaw members)이 鉗을 中心으로 회전할 수 있는 회전각을 制限하는 한쌍의 固定鉗의 構成品과一般的으로 수평인 두개의 받침팔 사이에連結된 신축성 있는連結手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被訴된 裝置에 있어서 피고는 체인이 아닌 複動式의 水壓 실린더를 使用하였다.

주어진 水準에 固定되었을 때, 이 실린더는 신축성이 있다기 보다는 단단하였다. 實審法院은 크레임에서의 伸縮性 있는(flexible)이라는 말의 慣行的, 日常的 意味가 積極적으로 단단한 어떠한手段도 배제한다는 이유를 非侵害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第5區 賽 소법원은 그러한 해석은 特許의 基本目的, 特許出願의 來歷 및 크레임의 積極적인 文言과 상반된다고 判示하면서 하급심 判決을 파기하였다.

첫째로 法院은 特許權者에게 주어진 言語創作의 許可(Lexicographic license)를 그 이유로 하였다.

“커팅 헤드(Cutting head)의 角度를 變化시킬 수 있는 모든 可能한手段을 포괄할 수 있는範圍의 屬概念 어귀(Generic phrase)가 없었기 때문에 Meece and Dew의 特許辯護士는 “伸縮性 있는 連結手段”(Flexible interconnection means)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였다.

Meece-Dew 特許의 基本概念은 切斷機의 커팅 헤드의 렌이 角度上調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調整可能한 連結手段(Adjustable interconnection means)이라는 用語가 보다 適切히 그 目的하는 바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Meece-Dew 特許의 크레임을 再作成하는 것은 本원의 任務가 아니다.

둘째로 法院은 特許된 裝置와 被訴된 裝置가 “狀況에 따라 伸縮性 있는 것 또는 신축성이 없는 것”이 될

# 論壇解説

## 範圍(8)

### 判例 중심



張舜鎬

〈辯護士·辨理士〉

#### ■ 이달의 目次 ■

- 第1章. 特許權 侵害의 成立
- 第2章. 特許의 同一性 判斷에 관한  
各國의 學說 및 判例
- 第3章. 特許의 保護範圍
- 第4章. 特許侵害에 대한 對策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수 있는 事實을 指摘하였다.

“양 절단기는 必要에 따라 어떤 案에서는 伸縮성이 있었다. 완전히 상부구조의 기본은 절단기가 適切한 커팅 角度를 調節하거나 切斷機의 組立品이 있는 트랙터를 操作하기 위해 들어올려지거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兩 切斷機가 水壓 실린더로 들어 올려져서 제 位置에 놓여졌을 때에는 固定性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 手段의 決定的인 要素는 그것이 調節可能性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被訴된 裝置가 改良되었다거나 다른 부수적 機能을 遂行한다고 하여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 指摘되었다.

#### (4) 全要素 考慮의 原則

##### (The “All Element” Rule)

美國의 경우 特許의 크레임은 전형적으로 序文(Preamble), 連結語(Transition)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要素(Element)로 이루어지며 이 각 要素는 크레임의範圍를 축소시키거나 制限한다. 이것은 一般的인 다른 諸外國의 特許實務와 일치한다. 그結果 어떤 裝置나 方의 크레임의 모든 要素(均等論에 의한 均等要素 포함)를 包含하지 않으면 特許된 크레임이 그 方法이나 裝置를 意味한다거나 그것에 特許權의 効力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原則을 美國에서는 All Element Rule이라고 부른다. 이 All Element Rule은 美國에 있어서 사실상 크레임의 作成과 解釋에 있어서普遍的인 原則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美國法院에서 소위 結合(Combination)크레임의 경우에 자주 適用된다. 이 原則下에서 침해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被訴된 裝置나 方法은 크레임의 모든 요소를 包含해야 하며

다른 것을 附加하는 경우에도 침해는 成立한다.

어떤 裝置나 方法이 크레임의範圍에 包含되는 가는 우선 크레임의 문언에 의해서 決定된다. 美國에 있어서 特許 크레임의 連結語로서 “Comprising”을 使用하는 크레임은 Open claim이라고 하여 附加의in 要素를 添加한 裝置, 方法도 包含하는 의미로 使用된다. 이것은 特許된 裝置의 改良이 반드시 침해를 避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一方의 原理와 일치한다.

단일 크레임에 대한 All Element Rule의 適用例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Donald S. Chism著 前揭書 p. 18—32. 1)

鍾(Bell)·책자(Book)·양초(Candle)와 양초에 點火하기 위한 手段을 包含하는 장치(Widget)의 경우에 있어서 책자 및 양초를 包含하나 點火手段이 없는 裝置는 침해를 構成하지 않을 것이다나 개량된 形態의 鍾·책자·양초點火手段 및 消燈手段을 포함하는 裝置는 명백히 침해를 構成하는 것이다.

#### (5) 手段(Means) プラス

##### 機能(Function) 要素

美國特許法 제112조의 마지막 패러그라프는 “結合에 관한 크레임에 있어서 要素는 그 構造·材料·또는 行為를 引用함이 없이 어떤 特정의 機能을遂行하는手段 또는 工程(Step)으로서 記載할 수 있다”고規定하고 있다. 그러한 要素는 一般的으로手段プラス機能要素라고 부른다. 이 패러그라프는 이어 “그러한 要素가 包含된 크레임은 明細書에 記載된 것에 對應하는 構造·材料·또는 行為 및 이에 대한 均等物을 나타내는 것으로 解釋되지 않으면 안된다”고規定하고 있다.

“手段プラス機能”要素은 많은 事件에서 適用되고 解釋되어 왔다. D. M. I., Inc. v. Deere & Co. (1985)事

件에서 聯邦巡回法院은 手段 프러스 機能要素에 있어서의 要素解釋과 司法의으로 發展된 均等論 適用의 差異를 強調하였다.

“第112條에서의 均等이라는 말은 均等論과 混同되어서는 안된다. 均等論을 適用함에 있어서 事實을 判斷하려는 者는 特許의 遂行記錄, 發明이 基本特許에 판한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인가의 여부 및 先行記錄에 비추어 特許된 發明에 付與되어 있는 均等의 範圍를 決定해야 한다.”

이에따라 다음 段落로서 被訴된 裝置나 方法의 全體가 特許크레임의 範圍에 든다고 할만큼 特許된 크레임과 동일한 것이냐 다시말해서 實質적으로同一한 結果를 達成하기 위해同一한 方式을 使用하는가를 決定해야 한다.

그러나 第112條의 手段 프러스 機能 패러그라프를 適用함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오직 크레임에 기재된 機能을遂行하는 被訴된 裝置의 단일手段이 크레임의 機能을遂行하는 것으로 同 特許의 明細書에 記述된 構造와同一하거나 均等한 것이냐에 있다.”

한편 이 問題에 관하여 Palumbo V. Don-Joy Co. (1985)事件에서 美國의 聯邦巡回法院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D. M. I. Inc. v. Deere & Co.에서 指摘한바대로 均等論의 分析과 第112條에서의 均等을 包含하는 文字대로의 侵害分析과의 사이에는 相異點이 存在한다. 그에 이어 맹크事件의 均等論에 관한 概念은 모든 均等論의 決定에 適切하다.”

결론적으로 均等論에서 말하는 均等의 範圍는 均等論下에서의 侵害與否 判斷에는 適切하나 特許法 제112條의 手段 프러스 機能 條項에서의 均等에는 適切하지 않다는 것이 美國의 判例理論인 동시에 多數說이라 할 수 있다.

### 다. 實體的 保護領域

위에서는 美國特許에 있어서 크레임 文言의 解釋原則에 관한 學說과 判例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解釋된 크레임을 被訴된 物이 侵害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事項들이 考慮되어야 할 것인가가 問題로 된다.

美國의 경우 特許侵害(Infringement)는 불법행위법의 罪물로서 確立된 判例理論이다. 侵害은 一侵害가 타인의 特許權의 存在를 알지 못하고 행하여 졌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는다—他人의 特許權을 侵害하는

行爲이다. 特許請求된 發明을 權限없이 製造·使用· 또는 販賣하는 行爲는 侵害로 된다. 美國議會는 현재의 特허법이 1952년에 제정될 때까지 侵害이론을 입법화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現在의 美國 特許法은 特許가 개인적 財產權으로서의 性質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特許權을 侵害당한 特許權者가 民事訴訟에 의한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美國特허법은 侵害의 形態로서 3종의 侵害—直接侵害·積極的 敷唆 및 寄與侵害—를 規定하고 있다.

#### (1) 直接侵害

美國內에서 特허권의 存續期間 中 特許된 發明을 權限없이 製造 使用 또는 販賣한 者는 特許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된다. 35 U.S.C. § 271(a)

直接侵害은 文字대로 侵害와 아울러 均等論이 認定되는 範圍에서의 侵害가 可能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侵害與否의 決定에 있어 美國의 判例法上 認定되는 其他의 原則들에 관하여 簡單히 설명한다.

##### (가) 要素의 置換

均等理論에 의한 直接侵害은 特許發明의 要素를 置換함에 의해 회피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한 發明者가 몬테리 정어리의 내장을 95%까지 자동적으로 除去하는 機械에 대하여 特許를 받았다. 종전 機械의 除去率은 50%에서 60%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州 厚生局이 정한 제거율 95%에 달하기 위해서는 機械로 處理한 후 사람이 다시 하나 하나 檢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이 特許發明은 魚類 통조림 업계에서 순식간에 事業적인 成功을 거두었다. 被告 통조림업자는 特許 機械를 연구하고 部品 多數의 配置를 바꾸었다. 그 結果 構造는 類似하지 않으나 同一한 効果를 達成하는 機械를 製作하였다. 이에 대하여 發明者는 特許權 侵害을 理由로 訴를 提起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하였다.

法院은 機械의 部品의 置換은 그 再 配置가 종래와 동일한 効果를 가져오는 때에는 侵害을 회피할 수 없다고 判決하였다.

##### (나) 要素의 부가

均等理論에 의한 直接侵害은 特許發明에 要素를 부가하고 그것이 改良의 結果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侵害가 회피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한 發明者가 쿠손·매트리스·救命具·며개·其他用途에 使用되는 浮力性·彈力性 및 防水性 있는 Filler

pad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美國內의 연쇄 소매점이 안락의자를 輸入하였던 바, 그製品에 特許物品이 使用되고 있었기 때문에 發明者は 同 小賣店을 상대로 特許權 侵害를 理由로 訴를 提起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매점은 당해 물품은 特許發明을 改良한 부가부분이 包含되어 있다고 항변하였다. 特許發明은 Filler pad를 의자의 형틀에 형질끈으로 接着시키는 것이 要求되었다. 소점매의 물품은 接着用 형질끈이 의자의 금속성 형틀의 端部에 位置한 韓은 プラスチック 製 亂에 热接着 되어져 있었다. 法院은 시트 プラ스チック의 부가는 중요한 改良이나 特許發明과 동일한 效果를 達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均等理論에 의해 侵害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要素의 생략

美國의 均等理論에 의하면 特許請求範圍에 특히 기재된 要素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直接侵害의 責任을 免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特許에 있어서 복수의 要素를 하나로 置換하거나 또는 하나의 要素를 복수의 要素로 置換하는 것이 侵害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變更은 어떠한 均等 요소로 特許에 기재된 交換要素을 치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均等理論의 適用範圍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要素의 생략이 侵害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說例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美國의 3M會社의 종업원이 주로 電流絕緣裝置에 使用되는 비닐 プラスチック 테이프에 대하여 再發行 特許를 받았다.

特許請求範圍은 非揮發性 液狀 可塑劑·軟性·粘着性樹脂質可塑劑 및 필름의 内側 표면에 융합한 粘着性塗料를 혼합한 필름 裏面으로構成되는 粘着性 절연 테이프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후 시어즈 로버그 社는 필름 背面에 액상 가소제가 包含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외에는 特許製品과 동일한 비닐プラスチック 테이프製品을 販賣하기始作하였다. 이에 대하여 特허권자가 訴를 提起하였으나 法院은 侵害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일 효과가 達成된다고 하여도 被疑製品은 特許請求範圍에 包含되지 않고, 따라서 均等한 製品이 아니기 때문에 侵害로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라) 적법한 우회發明

特許를 侵害하지 않으면서同一效果를 達成하는 製品을 만들기 위해 特許를 研究하고 特許請求範圍의 문언을 分析하는 작업이 행해진다. 美國에 있어서 소위 特許를 우회하는 고안(Design-around)은 완전히 合法의인 것이다. 그理由는 美國 特許를 取得한 發明者에

대한 적절한 保護는 均等理論에 의해 特許의 外周경계로서 保護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의 法院은 한쪽에 均等理論이 있고 그 다른 끝에는 적법한 우회발명의 이론이 있다는 基準에 의해 侵害의 성부를 판단한다. 均等理論이 適用되는範圍은 特許發明마다 다르다.

#### (2) 積極的 教唆(Active Inducement)

美國 特許法은 積極的으로 特許權 侵害을 교사한자는 侵害者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35 U.S.C. § 271(b))고 规定한다.

美國聯邦抗訴法院의 判例는 侵害의 積極的 교사를 “사실상 타인의 特허권 侵害를 發生시키거나 그것을促求, 勸誘 또는 造成하는 일련의 行為”라고 하는 广泛한 用語로 記述하고 있다. 侵害의 積極的 교사 責任이 認定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개의 사실이 證明되어야 한다.

① 第3者에 의한 特許權 侵害가 發生할 것이라는 것을被告가 認識하고 있었을 것

② 第3者가 特許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되는 製造, 使用 또는 販賣를 行할 것을被告가 의도하여 行動하였을 것

③ 제3자가 特許權을 侵害하였을 것

美國의 경우에도 이 적극적 교사에 관한 판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상세한 論議를 하고 있는 것이 1건 있다. 어떤 보선직원(Railroad supervisor)이 線路이 고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裝置에 대하여 機械와 方法에 대해서 特許를 받고 保線機器의 製造業者에게 實施許諾를 하였다. 그런데被告가 特許의 實施方法을 說明한 操作·保線 메뉴얼을 접부하여 機械를 販賣하기始作하였기 때문에 特허권자 및 독점적 실시권자는 기타 책임사항과 함께 直接侵害에 대한被告의 積極的 교사 책임을 물어왔다. 地方法院은 이하 3가지의 사실을 認定하여 피고에게 責任이 있다고 하였다.

① 제3자인被告의 顧客에 의한 被疑 機械의 使用은 直接侵害이다.

②被告는 제3자인 顧客이 特許를 實施할 權限을 갖지 않는 것을 特허권자로부터 문서로 그 뜻을 통지받고 있기 때문에 認識하고 있었다.

③被告가 접부한 메뉴얼 및 廣告文書를 一讀하면被告가 제3자인 顧客에게 侵害 行為를 행할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적접침해에 대한 제①의 認定에 同意할 수 없다는理由로 本件을 과기하였다. <계속>